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-60호

「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」 제17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35조 제3항 제14호 나목에 따라 우편물류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. 11. 7.

우정사업본부장

우편물류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

1. 위탁법인 :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

2. 위탁업무

가. 우편물의 배달 및 그 부대사업

나. 우편물의 분류·발송·도착업무 및 그 부대사업

다. 우편물의 운송 및 그 부대사업

라. 제3자물류(3PL)사업 운영 및 그 부대사업 등

부칙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,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2-56호(2012.10.22.)는 폐지한다.